

부문회 회칙

· 전력기술부문회 회칙	88
·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회 회칙	92
· 전기물성·응용부문회 회칙	96
· 정보 및 제어부문회 회칙	100
· 전기설비부문회 회칙	104



사 법 단 대 한 전 기 학 회

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

전력기술 부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 라 한다) 규칙 제6장 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하며, 전력기술 부문의 학술 및 기술을 발전,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「전력기술 부문회」 (이하 “부문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주소지) 본 부문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 사무국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부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부문회 논문지 편집 및 발간
2. 부문회 학술대회, 학술발표회, 세미나의 개최 [2024.01.12 개정]
3. 부문회의 학술 및 기술 분야의 연구조사 사업
4. 기타 본 부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본 부문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관 제2장 제6조, 규칙 제3장 제2조,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본 학회 정회원, 준회원으로서 본 부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부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회비) 부문회 회비는 본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 본 부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부문회 회장 1명
2. 부문회 부회장 4명 [2020.02.14 학회 정관 개정, 2020.10.22 부문회 총회 승인]
3. 부문회 이사 40명 이내 [2005.07.20 개정, 2020.02.14 학회 정관 개정, 2020.10.22 부문회 총회 승인]
4. 부문회 감사 2명
- ~~5. 연구회 위원장(조항 삭제)~~ [2024.01.12 개정]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부문회 회장은 3회까지 연임(중임)할 수 있다.

②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1조 1항 및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부문회 회장은 본 부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문회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문회 부회장은 부문회 회장을 보좌하며 부문회 회장 유고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부문회 이사는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부문회 이사회 또는 부문회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1조(임원 선출) 본 부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장, 감사는 본 학회 규칙 제6장 제14조 ①항에 따라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부문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본 부문회의 부회장, 이사는 부문회 회장이 추천하여 부문회 총회에 보고한다. 단, 부회장은 산업계 출신 부회장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[2022.10.20 개정] [2024.01.12 개정]
3. 본 부문회의 임원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4. 본 부문회 회장, 감사의 선출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2조(감사의 직무) 본 부문회의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는 일
2. 본 부문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대의원회,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나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4 장 총 회

제13조(총회의 기능) 부문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부문회 회칙 변경의 승인
2. 부문회 임원 및 이사의 보고 인준 (회장, 감사)
3. 부문회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4. 기타 중요 사항

제14조(총회의 소집) ① 부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부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부문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부문회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(총회 의결 정족수) ① 부문회 총회는 정회원(당해 년도 회비 완납 자) 20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.

② 본 부문회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6조(총회 소집의 특례) ①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2.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3.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 5 장 대 의 원 회

제17조(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본 부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문회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학회 평의원 중 해당 부문회 소속 회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부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 [2022.10.20 개정] [2024.01.12 개정]

제18조(대의원회 기능) 본 부문회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부문회 회장 선출
2. 부문회 감사 선출
3. 부문회 사업계획, 예산, 결산 동의
4. 부문회 회칙 및 내규의 제·개정 동의
5. 중요 사업보고 및 자문

제19조(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상·하반기 년 1회 이상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대의원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6 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 기능)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 및 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
2. 부문회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부문회 회칙 및 내규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부문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부문회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1조(이사회 구성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 회장, 부문회 부회장, 부문회 총무이사, 부문회 재무이사, 부문회 편집이사, 부문회 학술이사, 부문회 사업이사, 부문회 국제이사, 부문회 협동이사, 부문회 감사로 구성한다. [2005.07.20 개정] [2024.01.12 개정]

② 부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의 임원을 둘 수 있다. [2022.10.20 개정]

제22조(이사회 소집) ① 본 부문회의 이사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년 6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부문회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2.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
제 7 장 회 비

제25조(회비) 본 부문회의 회비는 본 학회 정관 및 규칙 제3장 4조~6조의 규정에 따르되 부문회 회비 금액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8 장 재정 및 회계

제26조(재정) 본 부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부문회 회원의 회비

2. 기부금, 찬조금 또는 본 학회 보조금
3. 사업에 부속되는 수입
4. 기타 수입금

제27조(회계년도) 본 부문회의 회계년도는 본 학회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8조(수지 예·결산) ① 부문회의 수지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부문회 이사회의 의결 및 부문회 총회의 승인과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본 부문회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9 장 보 칙

제29조(사업 보고) 본 부문회의 총회, 학술대회, 학술발표 행사 등 활동이나 사업은 매 사업마다 결과보고서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한 사항은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30조(회칙의 변경) 본 부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재적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표창 또는 감사패) 본 부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행사 등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32조(기타사항) 본 부문회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정관이나 규칙 및 부문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회칙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(2020년 2월 14일 학회 정관 개정)
4.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5. 본 회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
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부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 규칙 제6장 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하며,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부문의 학술 및 기술을 발전,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「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부문회」(이하 “부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주소지) 본 부문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 사무국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부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부문회 논문지 편집 및 발간
2. 부문회 학술대회, 학술발표회, 세미나의 개최 [2024.01.12 개정]
3. 부문회의 학술 및 기술 분야의 연구조사 사업
4. 기타 본 부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본 부문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관 제2장 제6조, 규칙 제3장 제2조,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본 학회 정회원, 준회원으로서 본 부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부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회비) 부문회 회비는 본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 본 부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부문회 회장 1명
2. 부문회 부회장 4명 [2020.02.14 정관 개정, 2020.10.30 부문회 총회 승인]
3. 부문회 이사 40명 이내 [2005.07.20 개정, 2020.02.14 정관 개정, 2020.10.30 부문회 총회 승인]
4. 부문회 감사 2명
5. ~~연구회~~위원장(조항 삭제) [2024.01.12 개정]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부문회 회장은 3회까지 연임(중임)할 수 있다.

②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1조 1항 및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부문회 회장은 본 부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문회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문회 부회장은 부문회 회장을 보좌하며 부문회 회장 유고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부문회 이사는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부문회 이사회 또는 부문회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1조(임원 선출) 본 부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장, 감사는 본 학회 규칙 제6장 제14조 ①항에 따라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부문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본 부문회의 부회장, 이사는 부문회 회장이 추천하여 부문회 총회에 보고한다. [2024.01.12 개정]
3. 본 부문회의 임원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4. 본 부문회 회장, 감사의 선출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2조(감사의 직무) 본 부문회의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는 일
2. 본 부문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대의원회,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나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4 장 총 회

제13조(총회의 기능) 부문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부문회 회칙 변경의 승인
2. 부문회 임원 및 이사의 보고 인준 (회장, 감사)
3. 부문회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4. 기타 중요 사항

제14조(총회의 소집) ① 부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하고, 임시 총회는 부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부문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부문회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(총회 의결 정족수) ① 부문회 총회는 정회원(당해 년도 회비 완납 자) 20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.

② 본 부문회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6조(총회 소집의 특례) ①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2.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3.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 5 장 대 의 원 회

제17조(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본 부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문회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본 학회 평의원 중 해당 부문회 소속 회원과 기술위원회 위

원장 및 부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18조(대의원회 기능) 본 부문회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부문회 회장 선출
2. 부문회 감사 선출
3. 부문회 사업계획, 예산, 결산 동의
4. 부문회 회칙 및 내규의 제·개정 동의
5. 중요 사업보고 및 자문

제19조(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상·하반기 년 1회 이상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대의원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6 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 기능)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 및 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
2. 부문회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부문회 회칙 및 내규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부문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부문회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1조(이사회 구성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 회장, 부문회 부회장, 부문회 총무이사, 부문회 재무이사, 부문회 편집이사, 부문회 학술이사, 부문회 사업이사, 부문회 국제이사, 부문회 협동이사, 부문회 감사로 구성한다. [2005.07.20 개정] [2024.01.12 개정]

② 부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의 임원을 둘 수 있다. [2022.10.20 개정]

제22조(이사회 소집) ① 본 부문회의 이사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년 6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부문회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2.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
제 7 장 회 비

제25조(회비) 본 부문회의 회비는 본 학회 정관 및 규칙 제3장 4조~6조의 규정에 따르되 부문회 회비 금액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8장 재정 및 회계

제26조(재정) 본 부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부문회 회원의 회비

2. 기부금, 찬조금 또는 본 학회 보조금
3. 사업에 부속되는 수입
4. 기타 수입금

제27조(회계년도) 본 부문회의 회계년도는 본 학회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8조(수지 예·결산) ① 부문회의 수지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부문회 이사회의 의결 및 부문회 총회의 승인과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본 부문회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9 장 보 칙

제29조(사업 보고) 본 부문회의 총회, 학술대회, 학술발표 행사 등 활동이나 사업은 매 사업마다 결과보고서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한 사항은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30조(회칙의 변경) 본 부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재적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표창 또는 감사패) 본 부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행사 등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32조(기타사항) 본 부문회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정관이나 규칙 및 부문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회칙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(2020. 2. 14 학회 정관 개정)
4.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5. 본 회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
전기물성·응용 부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 규칙 제6장 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하며, 전기물성·응용 부문의 학술 및 기술을 발전,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「전기물성·응용 부문회」(이하 “부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주소지) 본 부문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 사무국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부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부문회 논문지 편집 및 발간
2. 부문회 학술대회, 학술발표회, 세미나의 개최 [2024.01.12 개정]
3. 부문회의 학술 및 기술 분야의 연구조사 사업
4. 기타 본 부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본 부문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관 제2장 제6조, 규칙 제3장 제2조,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본 학회 정회원, 준회원으로서 본 부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부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회비) 부문회 회비는 본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 본 부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부문회 회장 1명
2. 부문회 부회장 4명 [2020.02.14 정관 개정, 2020.11.06 부문회 총회 승인]
3. 부문회 이사 40명 이내 [2005.07.20 개정, 2020.02.14 정관 개정, 2020.11.06 부문회 총회 승인]
4. 부문회 감사 2명
5. ~~연구회~~위원장(조항 삭제) [2024.01.12 개정]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부문회 회장은 3회까지 연임(중임)할 수 있다.

②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1조 1항 및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부문회 회장은 본 부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문회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문회 부회장은 부문회 회장을 보좌하며 부문회 회장 유고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부문회 이사는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부문회 이사회 또는 부문회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1조(임원 선출) 본 부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장, 감사는 본 학회 규칙 제6장 제14조 ①항에 따라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부문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본 부문회의 부회장, 이사는 부문회 회장이 추천하여 부문회 총회에 보고한다. [2024.01.12 개정]
3. 본 부문회의 임원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4. 본 부문회 회장, 감사의 선출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2조(감사의 직무) 본 부문회의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는 일
2. 본 부문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대의원회,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나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4 장 총 회

제13조(총회의 기능) 부문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부문회 회칙 변경의 승인
2. 부문회 임원 및 이사의 보고 인준 (회장, 감사)
3. 부문회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4. 기타 중요 사항

제14조(총회의 소집) ① 부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부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부문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부문회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(총회 의결 정족수) ① 부문회 총회는 정회원(당해 년도 회비 완납 자) 20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.

② 본 부문회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6조(총회 소집의 특례) ①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2.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3.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5장 대의원회

제17조(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본 부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문회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본 학회 평의원 중 해당 부문회 소속 회원과 기술위원회 위

원장 및 부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18조(대의원회 기능) 본 부문회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부문회 회장 선출
2. 부문회 감사 선출
3. 부문회 사업계획, 예산, 결산 동의
4. 부문회 회칙 및 내규의 제·개정 동의
5. 중요 사업보고 및 자문

제19조(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상·하반기 년 1회 이상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대의원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6 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 기능)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 및 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
2. 부문회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부문회 회칙 및 내규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부문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부문회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1조(이사회 구성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 회장, 부문회 부회장, 부문회 총무이사, 부문회 재무이사, 부문회 편집이사, 부문회 학술이사, 부문회 사업이사, 부문회 국제이사, 부문회 협동이사, 부문회 감사로 구성한다. [2005.07.20 개정] [2024.01.12 개정]

② 부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의 임원을 둘 수 있다. [2022.10.20 개정]

제22조(이사회 소집) ① 본 부문회의 이사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년 6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부문회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2.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
제 7 장 회 비

제25조(회비) 본 부문회의 회비는 본 학회 정관 및 규칙 제3장 4조~6조의 규정에 따르되 부문회 회비 금액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8장 재정 및 회계

제26조(재정) 본 부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부문회 회원의 회비

2. 기부금, 찬조금 또는 본 학회 보조금
3. 사업에 부속되는 수입
4. 기타 수입금

제27조(회계년도) 본 부문회의 회계년도는 본 학회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8조(수지 예·결산) ① 부문회의 수지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부문회 이사회의 의결 및 부문회 총회의 승인과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본 부문회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9 장 보 칙

제29조(사업 보고) 본 부문회의 총회, 학술대회, 학술발표 행사 등 활동이나 사업은 매 사업마다 결과보고서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한 사항은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30조(회칙의 변경) 본 부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재적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표창 또는 감사패) 본 부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행사 등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32조(기타사항) 본 부문회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정관이나 규칙 및 부문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회칙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(2020.02.14 학회 정관 개정)
4.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5. 본 회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
정보 및 제어 부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 라 한다) 규칙 제6장 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하며, 시스템 및 제어 부문의 학술 및 기술을 발전,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「정보 및 제어 부문회」 (이하 “부문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[2005.06.10 개정 “부문회 명칭 변경”]

제3조(사무소의 주소지) 본 부문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 사무국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부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부문회 논문지 편집 및 발간
2. 부문회 학술대회, 학술발표회, 세미나의 개최 [2024.01.12 개정]
3. 부문회의 학술 및 기술 분야의 연구조사 사업
4. 기타 본 부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본 부문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관 제2장 제6조, 규칙 제3장 제2조,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본 학회 정회원, 준회원으로서 본 부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부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회비) 부문회 회비는 본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 본 부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부문회 회장 1명
2. 부문회 부회장 4명 [2020.02.14 정관 개정, 2020.10.22 부문회 총회 승인]
3. 부문회 이사 40명 이내 [2005.07.20 개정, 2020.02.14 정관 개정, 2020.10.22 부문회 총회 승인]
4. 부문회 감사 2명
5. ~~연구회 위원장(조항 삭제)~~ [2024.01.12 개정]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부문회 회장은 3회까지 연임(중임)할 수 있다.

②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1조 1항 및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부문회 회장은 본 부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문회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문회 부회장은 부문회 회장을 보좌하며 부문회 회장 유고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부문회 이사는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부문회 이사회 또는 부문회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1조(임원 선출) 본 부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장, 감사는 본 학회 규칙 제6장 제14조 ①항에 따라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부문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본 부문회의 부회장, 이사는 부문회 회장이 추천하여 부문회 총회에 보고한다. [2024.01.12 개정]
3. 본 부문회의 임원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4. 본 부문회 회장, 감사의 선출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2조(감사의 직무) 본 부문회의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는 일
2. 본 부문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대의원회,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나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4 장 총 회

제13조(총회의 기능) 부문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부문회 회칙 변경의 승인
2. 부문회 임원 및 이사의 보고 인준 (회장, 감사)
3. 부문회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4. 기타 중요 사항

제14조(총회의 소집) ① 부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부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부문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부문회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(총회 의결 정족수) ① 부문회 총회는 정회원(당해 년도 회비 완납 자) 20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.

② 본 부문회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6조(총회 소집의 특례) ①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2.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3.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 5 장 대 의 원 회

제17조(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본 부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문회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본 학회 평의원 중 해당 부문회 소속 회원과 기술위원회 위

원장 및 부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18조(대의원회 기능) 본 부문회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부문회 회장 선출
2. 부문회 감사 선출
3. 부문회 사업계획, 예산, 결산 동의
4. 부문회 회칙 및 내규의 제·개정 동의
5. 중요 사업보고 및 자문

제19조(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상·하반기 년 1회 이상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대의원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6 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 기능)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 및 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
2. 부문회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부문회 회칙 및 내규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부문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부문회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1조(이사의 구성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 회장, 부문회 부회장, 부문회 총무이사, 부문회 재무이사, 부문회 편집이사, 부문회 학술이사, 부문회 사업이사, 부문회 국제이사, 부문회 협동이사, 부문회 감사로 구성한다. [2005.07.20 개정] [2024.01.12 개정]

② 부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의 임원을 둘 수 있다. [2022.10.20 개정]

제22조(이사회 소집) ① 본 부문회의 이사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년 6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부문회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2.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
제 7 장 회 비

제25조(회비) 본 부문회의 회비는 본 학회 정관 및 규칙 제3장 4조~6조의 규정에 따르되 부문회 회비 금액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8 장 재정 및 회계

제26조(재정) 본 부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부문회 회원의 회비

2. 기부금, 찬조금 또는 본 학회 보조금
3. 사업에 부속되는 수입
4. 기타 수입금

제27조(회계년도) 본 부문회의 회계년도는 본 학회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8조(수지 예·결산) ① 부문회의 수지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부문회 이사회의 의결 및 부문회 총회의 승인과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본 부문회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9 장 보 칙

제29조(사업 보고) 본 부문회의 총회, 학술대회, 학술발표 행사 등 활동이나 사업은 매 사업마다 결과보고서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한 사항은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30조(회칙의 변경) 본 부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재적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표창 또는 감사패) 본 부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행사 등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32조(기타사항) 본 부문회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정관이나 규칙 및 부문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회칙은 2005년 6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4. 본 회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(2020.02.14 학회 정관 개정)
5.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6. 본 회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
전기설비 부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 라 한다) 규칙 제6장 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하며, 전기설비 부문의 학술 및 기술을 발전,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「전기설비 부문회」 (이하 “부문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주소지) 본 부문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 사무국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부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부문회 논문지 편집 및 발간
2. 부문회 학술대회, 학술발표회, 세미나의 개최 [2024.01.12 개정]
3. 부문회의 학술 및 기술 분야의 연구조사 사업
4. 기타 본 부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본 부문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관 제2장 제6조, 규칙 제3장 제2조,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본 학회 정회원, 준회원으로서 본 부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부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회비) 부문회 회비는 본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 본 부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부문회 회장 1명
2. 부문회 부회장 4명 [2011.12.09 개정, 2020.02.14 정관 개정, 2020.10.23 부문회 총회 승인]
3. 부문회 이사 40명 이내 [2020.02.14 정관 개정, 2020.10.23 부문회 총회 승인]
4. 부문회 감사 2명
5. ~~연구회~~위원장(조항 삭제) [2024.01.12 개정]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부문회 회장은 3회까지 연임(중임)할 수 있다.

②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1조 1항 및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부문회 회장은 본 부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문회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문회 부회장은 부문회 회장을 보좌하며 부문회 회장 유고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부문회 이사는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부문회 이사회 또는 부문회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1조(임원 선출) 본 부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장, 감사는 본 학회 규칙 제6장 제14조 ①항에 따라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부문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본 부문회의 부회장, 이사는 부문회 회장이 추천하여 부문회 총회에 보고한다. [2024.01.12 개정]
3. 본 부문회의 임원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4. 본 부문회 회장, 감사의 선출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2조(감사의 직무) 본 부문회의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는 일
2. 본 부문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대의원회,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나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4 장 총 회

제13조(총회의 기능) 부문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부문회 회칙 변경의 승인
2. 부문회 임원 및 이사의 보고 인준 (회장, 감사)
3. 부문회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4. 기타 중요 사항

제14조(총회의 소집) ① 부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부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부문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부문회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(총회 의결 정족수) ① 부문회 총회는 정회원(당해 년도 회비 완납 자) 20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.

② 본 부문회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6조(총회 소집의 특례) ①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2.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3.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 5 장 대 의 원 회

제17조(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본 부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문회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본 학회 평의원 중 해당 부문회 소속 회원과 기술위원회 위

원장 및 부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18조(대의원회 기능) 본 부문회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부문회 회장 선출
2. 부문회 감사 선출
3. 부문회 사업계획, 예산, 결산 동의
4. 부문회 회칙 및 내규의 제·개정 동의
5. 중요 사업보고 및 자문

제19조(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상·하반기 년 1회 이상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대의원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6 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 기능)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 및 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
2. 부문회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부문회 회칙 및 내규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부문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부문회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1조(이사회 구성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 회장, 부문회 부회장, 부문회 총무이사, 부문회 재무이사, 부문회 편집이사, 부문회 학술이사, 부문회 사업이사, 부문회 국제이사, 부문회 협동이사, 부문회 감사로 구성한다. [2005.07.20 개정] [2024.01.12 개정]

② 부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의 임원을 둘 수 있다. [2022.10.20 개정]

제22조(이사회 소집) ① 본 부문회의 이사회는 부문회장이 소집하고 년 6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부문회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2.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
제 7 장 회 비

제25조(회비) 본 부문회의 회비는 본 학회 정관 및 규칙 제3장 4조~6조의 규정에 따르되 부문회 회비 금액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8 장 재 정 및 회 계

제26조(재정) 본 부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부문회 회원의 회비

2. 기부금, 찬조금 또는 본 학회 보조금
3. 사업에 부속되는 수입
4. 기타 수입금

제27조(회계년도) 본 부문회의 회계년도는 본 학회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8조(수지 예·결산) ① 부문회의 수지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부문회 이사회의 의결 및 부문회 총회의 승인과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본 부문회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9 장 보 칙

제29조(사업 보고) 본 부문회의 총회, 학술대회, 학술발표 행사 등 활동이나 사업은 매 사업마다 결과보고서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한 사항은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2024.01.12 개정]

제30조(회칙의 변경) 본 부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재적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표창 또는 감사패) 본 부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행사 등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32조(기타사항) 본 부문회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정관이나 규칙 및 부문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(2020.02.14 학회 정관 개정)
4.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5. 본 회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
산업전기응용부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 라 한다) 규칙 제6장 제17조에 의하여 설치하며, 산업전기응용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을 발전,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부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「산업전기응용 부문회」 (이하 “부문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주소지) 본 부문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 사무국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부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부문회 논문지 편집 및 발간
2. 부문회 학술대회, 세미나의 개최
3. 부문회의 학술 및 기술 분야의 연구조사 사업
4. 기타 본 부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본 부문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관 제2장 제6조, 규칙 제2장 제2조, 제3조에 의한 본 학회 정회원, 준회원으로서 본 부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부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회비) 부문회 회비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 본 부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부문회 회장 1명
2. 부문회 부회장 4명
3. 부문회 이사 40명 이내
4. 부문회 감사 2명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부문회 회장은 3회까지 연임(중임)할 수 있다.

② 본 부문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1조 1항 및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부문회 회장은 본 부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문회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문회 부회장은 부문회 회장을 보좌하며 부문회 회장 유고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.(연장자 순)

③ 부문회 이사는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부문회 이사회 또는 부문회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1조(임원 선출) 본 부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장, 감사는 본 학회 규칙 제6장 제14조 ①항에 따라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부문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본 부문회의 부회장, 이사는 부문회 회장이 추천하여 부문회 총회에 보고한다.
3. 본 부문회의 임원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4. 본 부문회 회장, 감사의 선출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2조(감사의 직무) 본 부문회의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부문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는 일
2. 본 부문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대의원회,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나 부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4 장 총 회

제13조(총회의 기능) 부문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부문회 회칙 변경의 승인
2. 부문회 임원 및 이사의 보고 인준 (회장, 감사)
3. 부문회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4. 기타 중요 사항

제14조(총회의 소집) ① 부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부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부문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부문회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(총회 의결 정족수) ① 부문회 총회는 정회원(당해 년도 회비 완납 자) 20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.

② 본 부문회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6조(총회 소집의 특례) ①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2.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3.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 5 장 대 의 원 회

제17조(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본 부문의 운영에 대한 회원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문회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본 학회 평의원 중 해당 부문회 소속 회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부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8조(대의원회 기능) 본 부문회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부문회 회장 선출
2. 부문회 감사 선출
3. 부문회 사업계획, 예산, 결산 동의
4. 부문회 회칙 및 내규의 제·개정 동의
5. 중요 사업보고 및 자문

제19조(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상·하반기 년 1회 이상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대의원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6 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 기능) 본 부문회 이사회는 부문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 및 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
2. 부문회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부문회 회칙 및 내규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부문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부문회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1조(이사회 구성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편집이사, 학술이사, 사업이사, 국제이사, 협동이사, 기술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
② 부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제22조(이사회 소집) ① 본 부문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년 6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결 정족수) ① 본 부문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부문회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부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
2.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
제 7 장 회 비

제25조(회비) 본 부문의 회비는 본 학회 규칙 제3장 4조~6조의 규정에 따르되 부문회 회비 금액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8 장 재 정 및 회 계

제26조(재정) 본 부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부문회 회원의 회비
2. 기부금, 찬조금 또는 본 학회 보조금
3. 사업에 부속되는 수입
4. 기타 수입금

제27조(회계년도) 본 부문의 회계년도는 본 학회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8조(수지 예·결산) ① 부문의 수지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부문회 이사회의 의결 및 부문회 총회의 승인과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본 부문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9 장 보 칙

제29조(사업 보고) 본 부문의 총회, 학술대회 등 활동이나 사업은 매 사업마다 결과보고서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한 사항은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0조(회칙의 변경) 본 부문의 회칙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재적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표창 또는 감사패) 본 부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행사 등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32조(기타사항) 본 부문회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정관이나 규칙 및 부문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2. (경과조치) 본 부문의 신설에 따라 기존 산업전기응용부회 규정은 소멸되며, 산업전기응용부회 회원, 학술영역 분과 및 자산 등 본 회칙의 시행 이전에 발행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부문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.